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83 |
|----------|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발 의 자: 이종환 의원(1명)
찬 성 자: 곽향기, 김영철, 김원중,
김태수, 김형재, 봉양순,
이영실, 최민규, 홍국표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신규 등록 박물관 증가에 따라 현행 제1조에 나열된 박물관 명칭을 삭제하고 신규 개관 박물관을 포함하여 별표에 명시함(안 제1조 및 별표 신설).
- 나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관일 확대함(안 제2조제2호).
- 다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추가함(안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).
- 라. 운영위원회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% 이상 되도록 함(안 제11조제1항).

- 마.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와 관한 규정을 추가함(안 제 14조).
- 바. 대관허가 신청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, 보완수단으로 우편,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함(안 제18조).
- 사.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공개 규정을 추가함(안 제19조제3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역사박물관, 한성백제박물관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 박물관”을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별표와 같다.

제2조제2호 중 “공휴일일”을 “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9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구성하되”를 “구성하되,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% 이상이 되어야 하며”로 한다.

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제18조 중 “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”를 “온라인 예약 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, 보완수단으로 우편,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할

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별표>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명칭 및 위치(제1조 관련)

| 명 칭 | 위 치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역사박물관 | 종로구 새문안로 55 (신문로2가 2-1) |
| 청계천박물관 | 성동구 청계천로 530 (마장동 527-4) |
| 서울생활사박물관 |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(공릉동 622) |
| 한성백제박물관 |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(방이동 88-20) |
| 서울우리소리박물관 | 종로구 율곡로 96 (와룡동 5-9) |
| 서울공예박물관 | 종로구 율곡로3길 4 (안국동 175-112) |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6. ~ 12. (생략)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8.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9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10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11. ~ 17. (현행 제6호부터 제1

②·③ (생략)

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
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
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
위촉한다. 다만, 박물관장(이하
“관장”이라 한다)은 당연직 위
원으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4조(위원회 회의) ① ~ ③ (생략)

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
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
수 없다.

2호까지와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

----- 구성하되, 외부 위
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%
이상이 되어야 하며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위원회 회의) ① ~ ③ (현
행과 같음)

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
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
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
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
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
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거나
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
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

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
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
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
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
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
이었던 경우

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
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
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
수 있고,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
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
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
한다.

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
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
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
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8조(대관허가 신청) 대관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(대관허가 심사) ①·② (생략)
<신 설>

<신 설>

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제18조(대관허가 신청) -----

 -----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
 되, 보완수단으로 우편,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제19조(대관허가 심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<별표>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명칭 및 위치(제1조 관련)

| 명칭 | 위치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역사박물관 | 종로구 새문안로 55 (신문로2가 2-1) |
| 청계천박물관 | 성동구 청계천로 530 (마장동 527-4) |
| 서울생활사박물관 |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(공릉동 622) |
| 한성백제박물관 |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(방이동 88-20) |
| 서울우리소리박물관 | 종로구 율곡로 96 (외릉동 5-9) |
| 서울공예박물관 | 종로구 율곡로3길 4 (안국동 175-112) |